

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나5825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양도절차이행 청구]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17. 4. 18 선고 2016나58256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24216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벌교농업협동조합

피고, 피항소인A

변론종결 2017. 4. 4.

판결 선고 2017. 4. 18.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7. 14. 선고 2015가단24216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3/7 지분, D의 2/7

지분, E의 2/7 지분에 관하여 가지는 1987. 11. 26.자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위 C, D, E에 대하여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라, 또는 피고는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C의 3/7 지분, D의 2/7 지분, E의 2/7지분에 관하여 1991. 4. 26. B과 체결된 매매계약이 1991. 11. 4. 합의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합의해제 사실 통지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 등은 최초 확정판결에서 B의 자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관련 재심대상판결이 최초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자 자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B이 자신이 C 등의 피상속인인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1991. 4. 26.자 약정은 이후 B과 피고가 서로 상대방에게 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1991. 11. 4. 합의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C 등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합의해제 사실을 위 C 등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들이 지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체결 전 상태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의 발생에는 그 논리적 전제로 그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체결

전과 후의 상태에 변경이 생겼거나 그 체결된 계약을 기반으로 한 이행이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위 1991. 4. 26.자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사실이 망인 또는 C 등에게 통지되었다거나 C 등이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동의 또는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최초 확정판결에서 C 등의 보조참가인이었던 피고 등이 한 위 1991. 4. 26.자 약정의 존재를 내용으로 한 항변이 받아들여지기는 하였지만, 그것만으로 당시 B이 C 등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C 등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동의 또는 승낙하였다고 보기에다 부족하다), 달리 위 1991. 4. 26.자 약정을 기반으로 한 변경 또는 이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B과 피고 사이의 1991. 11. 4.자 합의해제는 위 1991. 4. 26.자 약정의 효력을 소멸시키고 당초부터 위 약정이 체결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인 점,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재심판결에는 '최초 확정판결이 있는 이후 피고가 B을 상대로 제기한 위 1991. 4. 26.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09나5867 판결에서 위 1991. 4. 26.자 약정이 합의해제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위 사건에서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내용의 사실인정이 포함되었음이 인정되는바, 그에 의하면 C 등은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전에 이미 위 1991. 4. 26.자 약정이 합의해제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관련 재심대상판결이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C 등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새삼스레 위 합의해제 사실에 관한 피고의 통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및 그 양도사실 통지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합의해제 사실 통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정학

판사최진곤

판사선민정

별지